

의안번호	제 9 호
의 결 연 월 일	2018년 월 일 (제 회)

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8년 8월 28일

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
번호

9

제출연월일 : 2018년 8월 28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「아동복지법」 제45조, 「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」 제5조 및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에 의거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위탁기관 종료('18.10.1.)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'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'에 대한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위탁대상 :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
- 위탁기간 : 위·수탁 협약일로부터 5년간
- 위탁기관 : 아동복지법 제45조 제4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

※ 現 위탁기관 : 사회복지법인 명지원('15.11.16.~'18.10.1.)
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
- 위탁 주요사무
 - 아동학대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
 - 피해아동 상담·조사를 위한 진술녹화실 설치·운영
 - 피해아동,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·치료 및 교육
 -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
 -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
 - 자체사례회의 운영 및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설치·운영
 -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아동학대예방과 관련된 업무

3. 참고사항

가. 現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현황

- 위탁기관 : 사회복지법인 명지원(대표 정국명)
- 위 치 : 옥천군 옥천읍 문정3길 19
- 위탁기간 : '15. 11. 16. ~ '18. 10. 1.
- 사 업 비 : 373,134천원(기금50%, 도비50%)
- 직원현황 : 11명(관장1, 상담원6, 임상심리사1, 치료사2, 사무원1)
- 운영경과
 - 사회복지법인 명지원에 지정('06.12.08.~'15.11.15.)
 - 사회복지법인 명지원에 위탁('15.11.16.~'18.10.01.)

나. 관계법령 : 별첨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- 「아동복지법」 제45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)
- 「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)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-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-

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



보 건 복 지 국
복 지 정 책 과

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추진계획

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('18.10.1)됨에 따라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- 위탁기관 5년, 사회복지사업법·아동복지법 등 -

□ 관련규정

- 「사회복지법」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
- 「아동복지법」 제45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)
- 「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아동복지전담 기관의 설치)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

□ 위탁개요

- 사업위치 : 옥천군
- 위탁기간 : '18. 10. 2. ~ '23. 10. 1.
- 관할구역 : 4개군(보은, 옥천, 영동, 괴산)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
- 사 업 비 : 373,134천원(기금50%, 도비50%) ※ 연도별 변동
- 위탁사무
 - 아동학대 신고접수,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
 - 피해아동 상담·조사를 위한 진술녹화실 설치·운영
 - 피해아동,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·치료 및 교육
 -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
 -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
 - 자체사례회의 운영 및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설치·운영
 -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아동학대예방과 관련된 업무

※ 現 위탁기관/ 사회복지법인 명지원(대표 정국명), 위탁기간('15.11.16.~'18.10.1.)

□ 추진계획

① 의회동의 : '18. 9월 정례회기중

- 근거 :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

<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>

- ④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

② 위탁공고 : '18. 9월중

- 공고방법 : 도 홈페이지 공고
- 선정방법 :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사·결정
- 신청자격
 -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(지부포함)를 둔 아동 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
 -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 운영 취소 내지 해지 처분을 받거나 법인 또는 법령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법인은 제외

<아동복지법 제45조 제4항>

- ④ 도지사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<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>

-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 1. 3년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 실적이 있을 것
 2. 별표8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출 것
 3. 별표10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
 4. 법 제46조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

○ 위탁조건

- 관계법령·조례·지침 등을 준수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
- 사업공간 확보 및 임대운영시 임대보증금 수탁기관 부담
-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의 고용승계 의무이행
-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
 - ※ 보조금 이외의 추가 필요예산 자부담

③ 수탁기관 선정(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개최)

- 개최시기 : '18. 9~10월
- 구성인원 : 6~9명(관계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)
 - 구성방법 : 심의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
 - 위원임기 : 수탁기관 선정과 동시에 자동해산
 - ※ 당연직 3명(기획관리실장, 행정국장, 보건복지국장), 기타(전문가) 위촉
- 심사항목
 - 재정적 능력(20점) : 법인의 자산보유현황, 부채현황 등
 - 공신력(20점) : 법인의 설립목적, 업무관련성, 아동학대예방 업무실적 등
 - 사업수행능력(40점) : 사업계획의 적합성, 재정확보 계획의 적정성 등
 -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(20점) : 유관기관과의 협력구축 등
- 결정방법 : 최고·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(70점이상)

④ 협약체결 및 공증

- 체결시기 : '18. 10월
- 내 용 : 협약체결 및 협약 내용 공증, 업무 인수·인계

□ 향후계획

-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: '18. 9월
- 민간위탁 공고 : '18. 9월
-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: '18. 9~10월
- 협약체결 및 공증 : '18. 10월

붙임 관련지침 및 조례 발췌 1부.

□ 사회복지사업법

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(이하 "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·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.

1.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2.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
- ③ 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·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□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제21조(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) ①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,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(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)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이하 "위탁기관"이라 한다)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(이하 "선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.

1.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2.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3.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
4.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
-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.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□ 아동복지법

제45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)

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, 보호,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. 다만, 시·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·군·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□ 아동복지법 시행령

제44조(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) ①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,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3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
2. 별표 8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을 갖출 것
3. 별표 10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을 갖출 것
4. 법 제4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것

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의 아동 수, 이미 지정받은 법인의 소재지 및 그 법인과 지리적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□ 아동복지법 시행령[별표 8]

[별표 8]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(제42조 관련)

1. 설치기준

가. 사무실

긴급전화 설치에 필요한 적정 규모를 확보하여야 하며, 아동학대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
나. 상담실

- 1) 16.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상담 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.
- 2)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녹취기, 무인카메라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.

다. 심리검사·치료실

- 1) 16.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아동의 심리치료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- 2) 놀이치료·미술치료·음악치료,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- 3) 가족에 대한 상담·치료·교육에 적합한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
라. 그 밖의 시설

16.5제곱미터 이상의 자료실 또는 대기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.

2.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

가.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긴급전화의 운영과 법 제46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1명,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명 및 상담원 6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. 다만,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별표 7 제2호에 따른 상담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상담원을 겸할 수 있다.

나. 학대받은 아동의 신고·접수, 긴급 출동 등 아동학대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원 등 필요 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.

[별표 10]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기준(제43조 관련)

1.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 - 가.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 - 나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 - 다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7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2.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, 「평생교육법」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·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(이하 이 표에서 "대학등"이라 한다)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중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서 개설·운영하는 별표 18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. 이 경우 「고등교육법」, 「평생교육법」,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별표 18의 교육과목 중 일부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이수과목에 대한 교육을 면제한다.
 - 가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
 - 나. 대학등에서 심리학과(복지심리학과를 포함한다)를 졸업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
3.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은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, 미술치료, 음악치료,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등 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.

□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

- 제5조(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) ① 도지사 및 시장·군수는 법 제45조제2항 및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를 각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. 다만, 도지사는 시·군별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시·군을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복지전담기관을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하는 경우 도지사는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·군수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- ③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항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□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

-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)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.
- ③ 도지사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- 다만,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

□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

- 제6조(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)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·업무주관실·국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위탁사무와 관련있는 분야의 관계전문가를 도지사가 위촉한다.
-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주관 실·과·소장이 된다.